

(第12回-建設第1次)

□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94.1.1)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의 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에 따른 추가 전출분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됨에 따른 교원 인건비 추가분 확보와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개정('94.3.16)으로 인하여 시의회 회기일수 연장 및 일비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
- 정부지침에 따른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경비에 필요한 소요재원 890억 2천만원 마련을 위하여 기정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으며
- 그중 도로국 소관 경정예산은 건설사업비에서 28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금년도 도로국 소관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당초 예산 6,925억 8천 48만 6천원 중 금번 28억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6,897억 8천 48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보다 약 0.4% 감소된 규모입니다.
- 그 경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토지매입비가 36억원이었으나 공사 구간중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구간의 계획변경으로 보상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으며,
- 또한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

업은 '94.7.20 준공됨에 따라 채무액 40억원 중 32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道路局所管 追加更正豫算 編成案을 간략하게 說明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教育廳 支援事業이 불가피한 措置임을 널리 諒解하시어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禹仲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秋在燁 專門委員 秋在燁입니다. 1994年度 道路局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정기회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설사업비 예산 총 692,580,486천원 중 0.4%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삭감하여 689,780,486천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89,019,260천원 중 3%에 해당하는 28억원이 도로국 소관 분야에서 삭감 부분임.

○ 세부조정내역은 건설사업비 중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업에서 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사업비 경정(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율	경정사유
계	4,800,000	7,600,000	△2,800,000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사업	1,600,000	3,600,000	△2,000,000		도로개설구간내 영등포 교도소 보상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업	3,200,000	4,000,000	△ 800,000		'93채무원인행위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